

「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6. 5(목) 평창군수(종합민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6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4. 6. 20(금)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종합민원과장 장하진)

- 동 조례는 「부동산중개업법」 제37조의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 따라 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,
- 「부동산중개업법」 이 2005.7.29.자로 「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 되면서,
-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,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폐지대상인 『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』는 중개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고자 설치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4년 11월 5일 제정된 조례임.

- 상위 근거법령인 『부동산 중개업법』이 2005년 7월 29일 『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로 개정되면서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짐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